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제781호 2022. 6. 2.(목)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28호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 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2022-804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사천시 공고 제2022-815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1
- 사천시 공고 제2022-820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1

| | | | | | | | | | | |
|--------|--|--|--|--|--|--|--|--|--|--|
|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훈령 제428호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년 6월 2일

사천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홍 민 희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을 “사천시 행정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규정” 으로 한다.

제1조 중 “전화통화” 를 “행정전화” 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제2조(종전의 제3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
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취시스템”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전화에 의한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녹취정보”란 당사자 간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3. “당사자”란 행정전화를 매개로 한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를 관장하는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란 시스템 사용을 요청한 부서를 말한다.

제5조(책임자 및 관리자 지정) 시스템의 책임자 및 관리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시스템 정책임자: 관리부서의 장
2. 시스템 부책임자: 관리부서의 팀장
3.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의 업무 담당자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시스템 사용) 행정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시 소속 공무원, 공무원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사용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8조(녹취시 사전고지) 시스템 사용자는 수신 전화에 한해서는 자동시스템에 의해 통화상대자에게 녹취함을 고지해야 하며, 발신 전화의 녹취를 원할 경우에는 통화상대자에게 직접 녹취됨을 고지해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스템에 녹취되어 있는 자료는 30일간 저장하고 30일 이후에는 자동 삭제한다.
- ② 관리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취정보가 도난·누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시스템 내의 녹취정보를 제공·재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비밀유지의 의무) 사용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취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 제목 “(정보제공 및 절차)” 를 “(녹취정보 열람·제공 및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정보주체의 녹취정보” 를 “녹취정보”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범인검거 등 범죄의” 를 “문서로 요청한”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원의 재판업무수행” 을 “문서로 요청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천시 행정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 또는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녹취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시스템 사용 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스템 사용 제한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녹취정보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출시킨 사람
2. 녹취 시 사전고지를 하지 않고 사용한 사람
3.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4. 그 밖에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녹취정보 (열람, 제공) 관리대장

| 관리번호 (연도- 일련번호) | 신청 일시 | 신청 내용 | | | | | | 결재 | | | |
|-----------------------|----------|----------------|--------------------|-------------|------|------------|------|-------------------------|-----|----------|----------|
| | | 성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 부서명 (주소) | 녹취일시 | 녹취 전화번호 | 신청사유 | 열람·제공 (해당란에 ○ 표시) | 담당자 | 부 책임자 | 정 책임자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 | | | | | | | | 열람, 제공 | | |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6.2.>

|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사용제한 통보서 | | | | |
|--|-----|---|------|--|
| 사 용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 부서명 | | | |
| 제한사유 | | <input type="checkbox"/> 녹취정보의 관리 소홀로 다른 사람에게 누출 <input type="checkbox"/> 녹취 시 사전고지를 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부정하게 사용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p>「사천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녹취시스템 사용을 제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정보통신과장 (인)</p>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공고 제2022-804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고용승계,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운영 지원,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65,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정비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개선·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3조 및 제4조)

라.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고용승계,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운영 지원,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및 제21조)

차.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5.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민간위탁 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3.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제2항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1.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는 최소 1명 이상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이하 “자문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자료 제출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 및 관계 기관 등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제20조에 따른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종사자의 고용승계(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8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은 이전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1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0조(운영 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 등 징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에게 내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관을 지도·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민간위탁 사무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7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사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⑩ 사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사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사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⑮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0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사천시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
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㉑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사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사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18조제6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사천시 사천공항 특산물 판매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2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로 한다.

㉗ 사천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16조제1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㉞ 사천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㉟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㊱ 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
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㊲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㊳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제14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④①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④②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④③ 사천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
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 로
한다.

④④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
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를
“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④5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6 사천시 박재삼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7 사천시 노산 호연재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8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7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9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7조의2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

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

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공고 제2022-815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요원의 인명 구조훈련을 위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과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추가(안 제10조 및 안 제20조의2)
- 나.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상계 처리(안 제19조)
- 다. 수영장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9,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안 번 호 | 2022-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6.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요원의 인명 구조훈련을 위한 수영장 사용료 감면과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체육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생활체육관 추가(안 제10조 및 안 제20조의2)
- 나. 납부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상계 처리(안 제19조)
- 다. 수영장 사용료 감면사항 추가(안 별표 2)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 ~ 2022. 6.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 를 “뜻은 다음과” 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 를 “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 로, “허가 한다” 를 “허가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직장” 을 “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 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국민체육센터를” 을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을” 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0조의2 중 “국민체육센터” 를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14. (생략)</p> <p>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u>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u></p> <p>1. ~ 3. (생략)</p> <p>4. <u>직장(단체) 및 체육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u></p> <p>5. ~ 7. (생략)</p> <p>제10조(사용료)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u>국민체육센터</u>를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p> |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 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u>사용하려는 자가 여럿인 경우</u>----- ----- <u>허가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정관, 회원 명단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직장</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을</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사용료의 반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u></p> |

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일자에 체육시설 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 정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상계(相計)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회원권) -----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

<삭제>

[별표 2]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제18조 관련)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100% | |
|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80% | |
| ○ 사천시유도체육관은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유도전용 훈련장으로 이용하거나 각종 대회 유치목적으로 사용할 때 | 80% | |
| ○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 80% | |
| ○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 (연1회) | 80% | |
|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 80% | |
|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50%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0% | |
|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50% | |

| 구 분 | 감면율 (할인율) | 비고 |
|---|--------------|----------------------------|
|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50% | |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50%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50% | |
| ○ 경로대상자, 어린이, 학생, 군인 (이용자 및 전용사용자 모두 감면대상자일 경우 적용) | 50% | 별표1 수영장 이용료 별도 적용 |
|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인증 카드를 소지한 사람(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50% | 수영장만 적용 |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50% | |
| ○ 사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 50% | |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50% | |
| ○ 「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 |
| ○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20% | 수영장만 적용 |
| ○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 |
| ○ 해양경찰 등 수상 구조대원이 인명구조 훈련을 위해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50% | 수영장만 적용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5% 추가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공고 제2022-820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마.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411, FAX : 831-6038)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5.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6. 2. ~ 2022. 6. 22.(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등)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의 비용 부담)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하 “훼손자”라 한다)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은 훼손자가 도시숲등의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100주 이상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81호

-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은 이 조례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별표]

비용의 산정기준(제4조 관련)

| 부과구분 | 부과대상 | 시행구분 | 부과금액 산출 | 비용 부담방법 | 비고 |
|---|-----------------------------------|------|-------------------------------------|------------------------------|----|
|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 | 1. 옮겨심기 | 원인자 | 하자 시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비용 예치 | |
| | 2. 제거 | 원인자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비 | 원인자부담금 비용 납부 | |
| 원상회복 명령에 의한 경우 (제4조제2항) | 1. 훼손율이 50%이상 되어 도시숲등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 훼손자 |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 직접 원상회복 및 훼손자부담금 비용 예치 | |
| | | 관리청 | 원상회복을 위한 도급공사비 |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 |
| | 2. 훼손율이 20%이상 50%미만의 경우 | 관리청 | 해당 수목(시설)가격 20%이상 5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 |
| | 3. 훼손율이 20%미만의 경우 | 관리청 | 해당 수목(시설)가격 20%미만 + 재료비 + 작업비 | 훼손자부담금 비용 납부 | |
|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급공사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을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하여 산정 2. 수목(시설)가격: 고시된 조달단가 가격, 가격이 없을 경우 가격정보, 물가정보, 견적가 등 시중가격 적용 3. 비용 납부: 부담금 고지서 납부 4. 비용 예치: 부담금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치 5.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하자책임 담보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하자책임 담보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원인자에게 담보금을 환불한다.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 련 법 규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원상회복명령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하거나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1.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2.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하는 행위
3. 도시숲등 조성·관리 공사 이외의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가 필요한 행위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기준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